

고 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- 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(안양박달 및 횡성우천2)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에 따라 안양박달 및 횡성우천2 공공주택건설(행복주택) 사업계획을 (변경)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 년 1월 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업개요

연번	사업명	사업시행자 (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, 주소)	사업시행지역	비 고 (사업계획 (변경)승인)
1	안양박달 공공주택 (행복주택) 건설사업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 안양시청 사장 최대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46-4 일원	관보제199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199호(2021.1.6.)
2	횡성우천2 공공주택 (행복주택) 건설사업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 횡성군청 군수 장신상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	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54-2번지 일원	관보제201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435호(2021.12.29.)

2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(행복주택)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(상위계획 변경, 행복주택→통합공
공임대 등)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

3. 기 타

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5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의제 처리된 인가·허가·결정·심의 일괄 취소
(환원) : 게재생략

나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: 게재생략